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총 20건>

- 의회관련 조례안 4건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
- 총무과 소관 조례안 6건
-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
- 민원지적과 소관 조례안 1건
- 복지위생과 소관 조례안 1건
- 환경청소과 소관 조례안 2건

2006. 9. 15

달성군의회  
전문위원 과용곤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발의연월일 : 2006년 9월 11일

나. 발 의 자 : 채명지 의원 외 1인

다. 제안이유

의원의 윤리심사와 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라. 주요내용

(1) 제명을 띠어쓰기에 따라 표기함.

(2) 의원의 정계와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와 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안제2조 제2항)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에 윤리심사와 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의 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의원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발의연월일 : 2006년 9월 11일

나. 발의자 : 채명지 의원 외 1인

다.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006. 1. 1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라. 주요내용은

- (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안제2조 제2항, 안제3조 제2항)
- (2) 【별표 3】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일비를 “10,000”에서 “20,000”으로 상향 조정(안 제4조 제1항)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원 임기개시일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 (2)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2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3일 달성군의정비심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함에 따라
- (3)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철도운임 기준을 조정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별표 3】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4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현 행							개 정 안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	-	-	-	일비 (1일당)	-	-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20,000		
※비고 1. (생략)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u>새마을호 특실</u> 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2. ..... 특실 정액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발의연월일 : 2006년 9월 11일

나. 발 의 자 : 채명지 의원 외 1인

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회기 및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라. 주요내용은

- (1) 제명을 띠어쓰기에 따라 표기함.
- (2)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3)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 합산 하여 40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3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2)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의회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 합산하여 40일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3) 또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개정전 사용한 회의일 수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4) 상기와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의회형평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의회 기능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lt;참고&gt;

의회명	총회기일	정례회	임시회
대구. 달서구의회	100일 이내 (10일 이내연장)	연2회 40일 이내	
대구. 북구의회	100일 이내 (10일 이내 연장)	제1차 : 15일 제2차 : 30일	15일 이내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 I. 개요

가. 발의연월일 : 2006년 9월 11일

나. 발의자 : 채명지 의원 외 1인

다. 제안이유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과 지방의회의 중 선거구제도 및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라. 주요내용은

- (1) 제명을 띠어쓰기에 따라 표기함.
- (2) 총 선거후 의석배정 순서를 변경함.(안 제3조)
- (3)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
- (4) 예산안 및 결산의 명칭 변경(안 제61조·제65조)
- (5)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70조·제71조·제72조·제82조·제85조·제86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공직선거법 제23조·제26조 및 대구광역시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선거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임시 의석배정 순서를 지역선거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다음 비례 대표 출신의원 순서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2)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의원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3) 예산안과 결산의 명칭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4) 이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개정하는 규칙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

#### I. 개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출자 : 달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다. 개정이유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추진 등 신규행정 수요증가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 등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정원일부를 증원하여 균형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라. 주요내용은

(1) 총 정원을 656명에서 665명으로 9명 증원(안 제2조)

- 집행기관 : 646명  $\Rightarrow$  654명(증 8)
- 의회 : 10명  $\Rightarrow$  11명(증 1)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별표3】(안 제3조)

- 본청 : 354명  $\Rightarrow$  362명(증 8)
  - ☞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 의회사무과 : 10명  $\Rightarrow$  11명(증 1)
  - ☞ 5급(전문위원): 1명

※ 소요비용 : 325,684천 원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날로 늘어나는 신규행정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2)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하는 복식부기제도 실시에 따른 전담팀 구성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추진에 따른 복지정책 관련팀 구성,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등 신규행정 수요증가에 적극 대비한 일부부서의 인력보강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3) 의회인원의 증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자율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가 9인이하인 경우 5급 전문위원을 2명이하까지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각종 안건의 검토보고, 자치입법의 지원 등 사무지원 수요증가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음.
- (4) 이에 공무원의 증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보강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다. 제정이유

「공직선거법」의 개정(2005. 8. 4)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되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

### 라. 주요내용은

- (1)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
- (2)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를 할 경우 주민 연서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함.(안 제2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이번 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도 하향조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필요한 연서 주민수가 지역에 관계없이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발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 (3) 시 · 군 및 자치구별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정안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보고

#### I. 개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출자 : 달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다. 개정이유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비변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사이버회의 참석수당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안전 검토·제출 사항에 대하여 안전·심의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 라. 주요내용은

- (1)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비변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2) 위원회 출석수당 외 안전검토 및 제출에 따른 심의 수당 지급근거 마련
- (3) 화상회의 등 사이버회의 참석시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함.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군정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시 실비변상의 지급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2)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비변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하였으며,
- (3)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최근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화상회의 등 사이버회의시 출석수당을 지급가능토록 하고, 단순한 회의참석외에 안건의 심사수당을 1회 1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적정한 개정안으로 보여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총무과장)

다.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중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음.

#### 라. 주요내용은

#####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사망과 관련하여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경우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

⇒ 2일에서 3일로 변경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각각 사용일수를 3일로 신설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운영과의 차별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특별휴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 (2)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에 부합되도록 변경 및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보여짐.

### <참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分	대 상	당초	조정일수	비고
결혼	본인	7	좌동	
출산	배우자	3	좌동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좌동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3	1일연장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3	1일연장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신설

# 대구광역시 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I. 개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출자 : 달성군수(총무과장)

다. 개정이유

지역의 신규아파트 건립과 다사·죽곡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지역개발로 기존의 자연부락과 아파트 주민들간의 생활양식 차이로 인한 주민화합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조정하는데 있음.

### 라. 주요내용은

#### (1)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변경(별표)

읍면·리	리장정수	행정구역	비고
화원. 천내리	15 → 16	천내16리(신설)	태왕리더스아파트
논공. 남리	8 → 9	남9리(신설)	평광행복타운
다사. 서재리	6 → 7	서재 7리(신설)	와룡건영캐슬빌
다사. 죽곡리	변경없음	죽곡1, 2리 일부 ⇒ 매곡 2리(조정)	죽곡택지개발지구
다사. 매곡리	변경없음	매곡 2리(일부조정)	"
가창. 용계리	5 → 7	용계 6리(신설) 용계 7리(신설)	용계주공아파트 국태모닝포유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리의 구역은 자연의 부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2) 최근 화원, 논공, 다사, 가창지역의 신규아파트 건립과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라 상기와 같이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들의 사전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 및 조정코자 하는 것임.

### <참고>

- ① 리장정수 변경 : 229명  $\Rightarrow$  234명(증 5)
  - 화원, 천내16, 17리(1) 논공. 남9리(1),
  - 다사. 서재7리(1) 가창. 용계6, 7리(2)
- ②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사항
  - 기간 : 2005. 8. 10 ~ 2006. 8. 29
  -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I. 개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총무과장)

## 다. 개정이유

화원, 논공, 다사, 가창지역의 신규 아파트 건립과 옥포 본  
리리 및 간경리의 공장 및 연립주택 입주로 행정반의 분  
리·감소·증설에 따른 원활한 반운영과 주민생활의 편리  
성을 기하고자 함.

## 라. 주요내용은

#### (1)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 II.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2) 리장의 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으로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출자 : 달성군수(총무과장)

#### 다. 개정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리장의 선발표창 및 연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라. 주요내용은

리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한 표창, 연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이번 개정안은 리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표창 및 연수, 교육훈련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행정추진의 원활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음.

(2) 예산수반에 따른 집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총무과장)

다.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의 개정(2005. 12. 6)으로 준칙과 상이한 내용의 정비 등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라. 주요내용은

- (1)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 이외 관내 유휴시설로 활용가능도록 함.(안제1조~제7조)
  -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개정
- (2) 주민자치센터 기능 추가(안 제5조)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3)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안 제7조)
-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안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 (5)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무 강화(안 제18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의 개정내용 범위 안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2005. 12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개정

행정자치부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개정

### I. 개정이유

-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군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II. 주요내용

-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읍면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 시장·군수·구청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 마련

### III. 세부 개정내용

#### ○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조문 정비

- 읍면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제1조~제7조)
  - “읍·면·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
- 시장·군수·구청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제7조)

####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제7조, 제11조)

####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제17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제18조)

### IV. 행정사항

#### ○ 자치단체별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례 개정 추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총무과장)

다. 개정이유

2006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 등의 내용과 상이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 주요내용은

##### (1)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안 제5조)

- 협의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고, 40인 이내로 구성
- 협의회의 기능은
  -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 (2)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임기, 절차규정

### (안 제7조)

-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거 군수가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거 센터 운영주체인 법인과 군수가 협의하여 선임.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
-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함.

## (3)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 센터에는 소장 1인과 담당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과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법인으로 운영할 시 이사회를 둔다.

## (4)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관리 등 센터의 기본임무 규정(안 제10조)

## (5)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안 제14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
-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

## (6)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규정(안제17조)

## (7)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제2항)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2006. 2. 5.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여겨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I. 개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출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다. 개정이유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일부 제증명의 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 라. 주요내용은

#####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 인상(별표)

- 세목별 납세(과세)증명 및 납세증명

· 700원(1통) ⇒ 800원(1통)으로 인상

##### (2) 기타 제증명 수수료 인상(별표)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600원(1통) ⇒ 800원(1통)으로 인상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본)

· 기존과 같이 1,000원(1통)으로 하되, 찰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1,500원(1통)으로 인상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자치단체별 수수료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상기 단서 규정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2006. 6. 29) · 시행(2006. 7. 1)됨에 따라 5종의 발급수수료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0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함에 있어 사전 홍보 등 대책이 요구됨.

## &lt;참고&gt;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 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 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 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 수료	1 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 서의 발급 수수료	1 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 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 원)

## ○ 대구광역시 타구별 현황

구별	수수료인상범위	시행일	비고
동구	상기와 동일	2006. 11. 1	입법 예고중
남구	“		정례회 상정중
북구	“		입법 예고중
수성구	“	2006. 11. 1	입법 예고중
달서구	“	2006. 11. 1	입법 예고중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다. 개정이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 등이 자치단체별로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라. 주요내용은

#### (1)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2조)

- 체납징수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 세원발굴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2)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3조)

-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지급
-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지급
-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지급

#### (3) 지급대상자 공적심의를 위한 징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구성(안 제5조)

#### (4) 환수규정 신설(안 제9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를 위한 규정

## II.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대구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표준 조례안」 등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다. 제정이유

각종 공금의 수입·지출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라. 주요내용은

##### (1) 회계별 금고 수의 지정(안 제4조)

- 일반회계 금고는 1개, 특별회계·기금은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내로 함.

##### (2) 금고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고 수의방법의 경우 아래경우에 한함.(안 제5조)

-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 법률·조례에 의거 신규설치할 특별회계의 금고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일반·특별회계의 군금고 중에서 지정하는 경우

-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재지정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금고지정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안 제6조)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금리수준, 국민의 이용편의 등 5개 평가기준 마련

### (4)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달성군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9인 이내)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 금고지정 방법,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5) 제안서 심의·평가 및 금고의 지정·공포(안제9조)

- 군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금융기관심의 결과를 기초로 금고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2006.

5. 24)에 근거한 것으로

- 군금고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달성군수(민원지적과장)

다. 개정이유

2006년도 개별공시지사 조사·지침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 도출로 주민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 보호에 기하고자 함.

#### 라. 주요내용은

##### (1)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정비(안 제2조)

- 당연직 위원으로 군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강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 (2) 위원회의 기능 중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4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동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건설교통부)에 근거한 것으로
-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당해 시·군·구의 지가를 검증한 담당감정평가사는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재정비하고
-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부동산의 조사·산정에 공정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여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복지위생과장)

다.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라. 주요내용은

#### (1)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안 제4조)

- 재활상담, 직업재활, 취업 전 조기교육, 재활정보 지원, 재가복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 (2)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 규정(안 제5조)

-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이용자 수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

#### (3) 사용료 규정(안 제6조)

####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마련 (안제7조)

-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당사자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5) 수탁자의 임무(안 제8조)

-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 임대할 수 없음.

(6) 지도감독(안 제9조)

(7) 위탁의 취소(안 제10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 대구지역에 5개소의 장애인관련 복지관시설이 운영중에 있으나,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은 군관내에서는 최초로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장애인의 재활증진과 복지증진 등 운영에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 현재 논공읍 남리에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 건립중에 있으며, 오는 9월 22일 준공 및 개관식을 가질 예정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청소과장)

다. 개정이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56호)에  
의거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지정  
된 규격봉투의 미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  
하기 위함.

### 라. 주요내용은

#### (1) 과태료부과금액의 하향 조정(안 별표 1)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지정된 규격 봉투의 미사용,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  
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위법행위
- 금액 : 10만원(1차) → 5만원(1차)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제256호)  
에 의거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부 1차 과태료 부과금  
액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과 관련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  
관되는 개정안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I. 개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출자 : 달성군수(환경청소과장)

다. 개정이유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의 등장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본래취지와 상반되어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선코자 함.

#### 라. 주요내용은

##### (1)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4)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및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변경
  - 과태료 : 10만원 → 5만원
  - 신고포상금 : 50천원 → 과태료의 10%(5천원)
  - 포상금 지급건수 : 1인 월50건 이내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 지등) 및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한 전문신고인의 등장으로 쓰레기투기 방지의 본래취지와 상반되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여겨짐.

제152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2006. 9. 15

달성군의회  
전문위원 과용곤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다. 편성 배경

-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사업
- 2005년도 결산에 의한 국·시비 반환금 계상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방재사업
- 기 도로개설 등의 마무리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조정을 위한 것임.

### II. 예산안 편성내역

#### 가. 예산총괄

-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235,0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1,000백만원 보다 14,000백만원이 증가(증 6.3%)
  - 일반회계는 209,0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97,000백만원보다 12,000백만원이 증가(증 6.1%)
  - 특별회계는 26,0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000백만원보다 2,000백만원이 증가(증 8.3%)

## 나.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235,000	221,000	14,000	6.3%
일반회계	209,000	197,000	12,000	6.1%
특별회계	26,000	24,000	2,000	8.3%
공영개발사업	1,400	1,400	—	
의료급여기금	270	110	160	
새마을소득사업	790	250	540	
농공지구관리	940	890	50	
치수사업	9,890	9,000	890	
경영사업	12,710	12,350	360	

## 다. 세입부문 주요내역

【일반회계】 ----- 12,000백만원

○ 지방세 ..... 5,000 “

- 주민세 2,725 / 재산세 1,400 / 도시계획세 340

- 사업소세 230 / 지난년도 수입 300

## ○ 세외수입 ..... △106백만원

-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 22
-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80
- 잡수입 34 / 지난년도 수입 30
- 순세계잉여금 △472

## ○ 지방교부세 ..... 3,033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2,512 "

## ○ 보조금 ..... 1,561 "

- 국고보조금 1,172
- 시비보조금 388

## 【특별회계】 2,000백만원

## ○ 의료급여특별회계 ..... 160 "

- 세외수입(의료급여사업비 잔액 등) 80
- 보조금(의료급여사업비) 80

## ○ 새마을소득사업운영 ..... 540 "

## ○ 농공지구관리 ..... 50 "

## ○ 치수사업특별회계 ..... 890 "

## ○ 경영사업특별회계 ..... 360 "

-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임.

## 라. 세출부문 주요내역

【일반회계】 ----- 12,000백만원

○ 경상예산	-----	880	“
- 인건비(34,754 → 35,092)	338	“	
- 경상적경비(23,206 → 23,748)	542	“	
○ 사업예산	-----	12,118	“
- 보조사업(58,087 → 63,673)	5,586	“	
- 자체사업(72,724 → 79,256)	6,532	“	
○ 예비비 등	-----	△998	“
- 예비비(3,716 → 1,776)	△1,940	“	
- 기타(1,874 → 2,815)	941	“	

【특별회계】 ----- 2,000백만원

○ 경상예산	-----	37	“
- 인건비(319 → 343)	24	“	
- 경상적경비(5,905 → 5,917)	12	“	
○ 사업예산	-----	2,036	“
- 보조사업(63 → 143)	80	“	
- 자체사업(2,837 → 4,793)	1,956	“	
○ 예비비 등	-----	△73	“
- 예비비(2,290 → 2,136)	△153	“	
- 기타(16 → 96)	80	“	

## 마. 회계별 주요세출예산 내역

### 《일반회계》

#### ○ 경상사업

- 맞춤형 복지비 50백만원
- 직원 근무용 집기 50 "
- 민속투우대회 50 "
- 하빈복지센터 운영비 20 "
-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100 "
- 농업인 안정공제가입비 보전 30 "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역 20 "
-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20 "
- 참달성쇼핑몰 홍보차량 구입 20 "

#### ○ 보조사업

-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 1,640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 330 "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000 "
- 장애수당 320 "
- 공립보육시설 신축 320 "
- 노인여가시설 운영 난방비 240 "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80 "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20 "

## ○ 자체사업

- 다사읍 증축 220백만원
- 가창면 부속건물 신축 110 “
- 북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조성 120 “
- 인라인롤러경기장 부자매입비 1,100 “
-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50 “
- 마을회관 신축(2개소) 140 “
-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200 “
-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 200 “
- 구지 대암2 배수장 증설 100 “
- 하빈 현내배수장 설치 80 “
- 국가하천정비 500 “
- 화원 구라2교 470 “
- 서재보건진료소앞 도시계획도로 200 “
- 옥포반송리 인도교 설치 100 “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50 “
- 푸른달성가꾸기 및 녹지조성 150 “

## 《특별회계》

- 인건비 40백만원
- 소하천 정비 770 “
- 소하천 수해복구 430 “
- 예비비(치수사업) 360 “

## II. 검토의견

### ○ 세입예산의 경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 계상하는 등 조정하였으며

### ○ 세출예산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계상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일부 경상적 경비를 계상·조정하였으며, 지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방재사업분에 우선투자하는 등 사업성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 계상하는 등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짐.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6. 9. 15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곽 용 곤

##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도시건축과장)

다. 제안이유

- 다사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 기존의 일부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일부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함.

#### 라. 주요내용

##### (1) 다사서재공원조성사업과 먹거리단지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 다사서재공원 조성사업( $A= 58,050m^2$ )
  - 위치 : 서재리 산 10번지 일원
  - 사업비 : 4,000백만원
-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A= 62,100m^2$ )
  - 위치 : 부곡리 174번지 일원
  - 사업비 : 4,000백만원

## (2) 민속박물관 건립사업 등을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경추진

- 민속박물관 건립과 주민화합의 광장 조성사업  
⇒ 건립예정부지 협소와 토지소유자 매각불응
- 다사 ~ 서재간 도로확장개설사업  
⇒ 도로교통과와 죽곡택지 1지구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 다사읍사무소 ~ 정거장간 주변도로정비사업  
⇒ 공동주택부지 편입하고 대체도로 건설
- 변경내역

당초사업	변경사업	비고
- 민속박물관 건립과 주민화합의 광장조성사업 · 사업비 : 3,000백만원	- 다사문화복지센터건립사업 · 위치 : 죽곡리 25-2번지일원 ·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6,000m <sup>2</sup>	
- 다사~서재간 도로확장 개설사업 · 사업비 : 20,306백만원	· 사업비 : 14,600백만원 · 부지면적 : 3,683m <sup>2</sup> (1,114평)	
- 다사읍사무소~다사정거장간 주변도로 정비사업 · 사업비 : 4,000백만원		

## II. 검토의견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다사소도읍 육성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가교적 위치에 있는 소도읍을 지역적·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인근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투자사업비(계획)가 22,600백만원으로
  - 서재공원조성사업은 2005년 11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 1월 3일 주차장부지에 대한 보상통보를 한 상태임.
- 현재 변경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기내용과 같이 건립예정부지 협소와 대체도로의 개설, 사업부서에서의 사업시행 추진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주민들의 문화의식 수준과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152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6. 9. 15

달성군의회  
전문위원 곽용곤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9월 8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장)

다. 제안이유

- 생활체육 다변화에 따른 인라인-롤러 동호인의 활동수요를 해소하고 지역스포츠 시설의 산업적·경제적 가치의 극대화와
- 전국 경기대회등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휴식·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 라. 주요내용

#### (1) 토지매입

- 위치 :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55번지 일원(16필지)  
(명곡체육공원 부지내)
- 면 적 : 12,782m<sup>2</sup>(3,866평)
- 매입예상가격 : 716,386천 원(평당 185천 원)
- 사업명 :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부지

## II. 검토의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인라인롤러 동호인의 활동수요 해소와 휴식·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복합공간 조성에 필요 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은
  -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 사업비 : 4,270백만원
    - 국비 1,550 시비 800 군비 1,920백만원
  - 사업량 : 9,917m<sup>2</sup>(주경기장, 연습장, 관람석, 주차장등)
-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145회 정례회)에 의거 화원 명곡간이운동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부결된 사례가 있고
- 또한,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토지매입비 등으로 1,19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당시 전체사업비 42억 원중 국비가 820백만원 만 보조확정되어 국·시비 보조지원이 불투명할 시 군비부담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부결된 사례가 있음.

- 현재 국비 820백만원과 2007년 균특회계 예산 730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시비 전액의 보조가 불확실한 상태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원부담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국·시비의 확보와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임.